

#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연구

김규현\*

## A Study on Improvement Scheme for Korea's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System

Gyuhyun Kim\*

*Key Words:* Safety standards(안전기준), Enforcement ordinance(시행령), Safety standards implementation rules(안전기준 시행세칙), Device(장치), Regulations(규정), Automotive Components(자동차부품)

### ABSTRACT

The Korea's safety standards for vehicle have been strengthened to reduce casualties from traffic accidents since 1962. The standards have a rather complicated structure. The safety standards are composed of the main text and asterisks, and the safety standard implementation rules are composed of the main text, asterisks and appendices, and items of the same name are stipulated in other chapters within the safety standards.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simplifying the structure of these safety standards and integrating safety standard items with the same name. Through this, users'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will be improv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be more efficient such as securing safety quickly through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mated vehicles.

### 1. 서론

자동차관리법<sup>(1)</sup> 제29조에서 자동차안전기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며, 자동차부품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은 '62년 「도로운송차량법」으로 제정된 후 1986년 「자동차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은 일본의 보안기준을 준용하여 1962년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으로 제정되어 운용해 오다가 1987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부교수  
E-mail: kncap@hongik.ac.kr

안전기준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의 틀 속에서 출발함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안전기준이라기보다는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즉, 운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기준의 요소가 포함된 기준으로 시행되었으며, 1993년 안전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시 제작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하나의 장으로 추가되었다.

2003년 이전 국내의 자동차 승인제도는 형식승인제도로서 일본의 보안기준과 같이 신규 제작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을 완성검사라는 인증체제로 사용하던 관계로 현행의 안전기준에 제작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운행자동차에 관한 안전기준이 혼합되어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FMVSS<sup>(2)</sup>(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와 유럽에서 안전기준으로 사용하는 UN/ECE 규정<sup>(3,4)</sup>(Regulation) 등은 신규로 제작되는 자

동차만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기준으로 정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운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검사기준)은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안전기준 체계는 개별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독립된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문 내에 기준의 범위,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준, 시험법, 절차, 적용시기 등이 기술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안전기준 조항들이 성능 기준을 규정하는 규칙과 시험법 등을 규정할 시행세칙으로 분리된 계층구조로 되어있어 안전기준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안전기준의 개정 시 규칙과 시행세칙 각각을 개정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진다.

본 연구는 1962년 제정된 이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되어 온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규칙은 본문 및 별표로 구성, 시행세칙은 본문, 별표 및 별첨으로 구성되고 동일한 명칭의 항목이 안전기준 내의 다른 장에서 규정되는 등 다소 복잡한 구성체계가 되어있어, 사용자의 법규 이해도 향상, 자율주행자동차 등 급변하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신속한 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의 구성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동일한 명칭의 안전기준 항목의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2. 국내·외의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 2.1.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정비 및 검사,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부품자기인증제도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sup>(5)</sup>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의 구조 7개, 장치 21개 및 자동차부품 13개를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명칭이 변경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sup>(6)</sup>(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 안전 및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

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sup>(7)</sup>(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상기 안전기준의 위임사항과 안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총 4장으로 1장은 총칙, 2장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3장은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4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과 같이 149개 조문과 137개 별표가 있다. 그리고, 시행세칙은 8개 조문, 별표 7개 및 별표 1의 별첨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 1은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법 등으로서 충돌 시 승객보호시험 등 113개 시험항목 및 대체연료 등 7개 별첨이 있다.

Table 1 Composition of safety standard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Classification	Contents
Safety standards	
Article	149 items
Asterisk	13 items
Safety standards implementation rules	
Article	8 items
Article 1	Detailed test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safety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 113 it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occupants in the event of collision - 7 attachments including alternative fuels
Article 1-2	Detailed test standards and test methods, etc. for safety standards for automated vehicles - 1 items
Article 2	Confirmation methods for safety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 26 items
Article 3	Confirmation methods for safety standards for two-wheeled vehicles - 8 items
Article 4	Certification details for the test report of imported automobiles
Article 5	Detailed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military boots
Article 6	Detailed standards and test methods for safety standards and performance tests of automobile parts, etc. - 12 items
Article 7	Special standards for safety standards of automobile parts - 12 items

## 2.2. 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 2.2.1. 유럽의 안전기준 체계

유럽의 자동차 관련 법규로는 UN의 유럽경제위원회(ECE)에서 정한 ECE Regulation과 경제공동체(EEC)에서 제정한 EEC Directives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나라별로 국가형식승인(NTA: National Type Approval)이 있다. 자동차 관련 법규는 형식승인원리(The Principle of Type Approval)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통합 형식승인 규정(92/53/EC)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생산 일치성과 각 판매 차량에 대하여 법규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 협의기구인 UN/ECE/WP29에서 1958년에 체결한 협정(1958협정)<sup>1)</sup>에 따라 신규 제작자동차에 대한 157개의 ECE 규정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규정은 범위, 성능 기준, 시험방법, 절차, 적용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2.2. 미국의 안전기준 체계

미국은 1960년대 초반, 안전이 사회 문제화되어 기본 법으로 「국가교통 및 차량안전법(National Traffic & Motor Vehicle Safety Act of 1966)」을 제정하고 차량의 인증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장비부품의 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운행 관련하여 주로 안전 또는 성능에 대하여는 미연방법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매체·폐차·정비 등 자동차관리사업은 각 주별로 주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과 성능·항공·철도 등 교통관련 총괄하여 연방규정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Transportation 분야(Part)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은 Part 571 FMVSS에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준은 범위, 성능 요건, 시험방법 및 절차, 적용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2.3. 일본의 안전기준 체계

일본은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운송차량법과

1) ECE/TRANS/505/Rev.3: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Conditions of Approval and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 for Motor Vehicle Equipment and Parts, done at Geneva on 20 March 1958

공해방지를 위한 대기오염방지법 및 소음규제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럽과 동일한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관리 기본 법규로 「도로운송차량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의 기술적 근거인 보안기준은 성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운송차량법<sup>8)</sup>에서 「보안기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령인 보안기준은 각 구조·장치에 대한 목적, 대상자동차의 종류, 핵심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로는 보안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와 각 구조·장치에 대한 성능, 시험조건, 판정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으며, 안전기준의 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보안기준의 내용구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의 안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 3.1. 안전기준 구성체계의 재분류

우리나라 안전기준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안전기준 관리를 위하여 안전기준의 조문 등 구성체계의 재분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동일한 안전기준 항목의 통합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반기준은 제2장, 성능 등 제작기준은 제3장으로 Table 2와 같이 15개 항목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조항을 단일화하는 등 알기 쉽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면, 현재 제2장 제26조(머리지지대)와 제3장 제99조(머리지지대)를 통합한 정비안은 제2장 제47조(머리지지대)로 한다. 또한, 미국 또는 유럽 UN/ECE와 같이 안전기준이라 함은 신규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 제2장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운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검사기준)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sup>9)</sup>

자율주행기술은 현존하는 기술과는 상이한 장치, 시스템 등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신규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안전기준은 별도의 절로 구성한다.

Table 2 Duplicate items of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Chapter 2. Section 1. Safety standards for automobiles Articles 11 to 58	Chapter 3. Safety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 etc. Article 85-2 ~ 112
Article 12-2 (Tire air pressure warning device)	Article 88-3 (Tire air pressure warning device)
Article 14 (Steering device)	Article 89 (Steering device)
Article 14-2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Article 89-2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Article 15 (Brake system)	Article 90 (Brake system)
Article 15-2 (Automobile stability control device)	Article 90-2 (Automobile stability control device)
Article 15-3 (Emergency automatic brake system)	Article 90-3 (Emergency automatic brake system)
Article 17 (Fuel system)	Article 91 (Fuel system)
Article 18 (Electrical equipment)	Article 18 (Electrical equipment)
Article 24 (Driver's Seat)	Article 97 (Installation of driver's and passenger seats)
Article 25 (Standards of passenger seats)	Article 97 (Installation of driver's and passenger seats)
Article 26 (Head restraint)	Article 99 (Head restraint)
Article 27 (Seat belt device, etc.)	Article 103 (Seat belt device, etc.)
Article 27-2 (Attachment device of child restraint system)	Article 103-2 (Attachment device of child restraint system)
Article 29 (Entrance)	Article 104 (Entrance)
Article 34 (Window, etc.)	Article 105 (Safety, etc. of window glass)

3) 현재 안전기준 제2장에서 자동차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며, 제3장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항목인 자동차부품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기준의 운영을 용이하도록 한다.

4) 국제기준 분류체계를 반영

국제기준인 UN/ECE Regulation 등과의 지속적인 기준조화 추진이 용이하도록 구조 및 장치별 조항의 구성 및 분류는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자동차의 장치 순서를 우선으로 하되 세계자동차안전기준협의기구(WP29)의 6개 분과<sup>2)</sup>별 분류체계를 가능한 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반영한다.

2) 일반안전분과(GRSG), 등화분과(GRE), 자율주행분과(GRVA), 충돌·충격분과(GRSP), 환경분과(GRPE), 소음·타이어분과(GRBP)

3.2. 안전기준 조문 구성의 재분류

3.2.1. 안전기준의 조항 개선 방안

안전기준의 조항 중에서 국제기준과의 조화,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현행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는 정면충돌, 측면충돌, 후면충돌 및 전복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조화 대상인 유럽 ECE 규정 및 미국 FMVSS와 같이 사고 유형별로 분리하여 제33조(정면충돌 안전성), 제34조(측면충돌 안전성), 제35조(후면충돌 안전성) 및 제36조(전복 안전성)으로 규정하고, 또한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과 제102조의4(기동측면충돌 안전성)을 각각 제33조와 제34조에서 통합하여 Table 3과 같이 규정한다.

Table 3 Amendment of articles related to car crashes

Current article	Amendment article
Article 102 (Protection of occupants in the event of collision) Paragraph 1-2 + (plus) Article 102-3 (Safety of frontal collision with fixed wall)	Article 33 (Protection of occupants in the event of a frontal collision)
Article 102 (Protection of occupants in the event of Collision) Paragraph 1 + (plus) Article 102-4 (Pole side impact performance)	Article 34 (Protection of occupants in the event of a lateral collision)
Article 102 (Protection of occupants in the event of Collision) Paragraph 2	Article 35 (Rear end collision)
Article 102 (Protection of occupants in the event of Collision) Paragraph 2	Article 36 (Roll over protection)

- 2) 현행 제98조(좌석등받이), 제100조(팔걸이) 및 제101조(햇빛가리개)는 차실내장재의 충격흡수성을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제46조)한다.

- 3) 등화 관련 장치는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순서를 고려하여 조명, 신호, 설치, 반사기, 기타 순서로 한다.

3.2.2. 안전기준 조문 구성의 재분류 방안

상기 안전기준 구성체계 재분류, 안전기준의 조항 개선편안 등에 따라 안전기준 157개 조문을 재분류한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 1)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등 현행과 동일하게 3개 조항(제1조~제3조)로 구성한다.
- 2) 제2장은 현행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을 통합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정비하며, 제1절은 제원, 연료소비율 기준 등 9개 조항(제4조~제12조)으로 구성, 제2절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부착된 장치 및 부속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사고 예방, 사고 시 피해경감, 사고 후 2차 사고 예방 분야로 분류하여 81개 조항(제13조~제93조)로 구성, 제3절은 자율주행 관련 기준으로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사항과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등 3개 조항(제94조~제96조)으로 구성한다.

- 3) 제3장은 이륜자동차 관련 안전기준으로 현행 2장 제2절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35개 조항(제97조~제131조)으로 정비한다.
- 4) 제4장은 부품별 안전기준으로 브레이크호스 등 12개 조항(제32조~제143조)으로 정비한다.
- 5) 제5장은 보칙으로 현행 제3장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을 보칙으로 이동하고, 6개 조항(제144조~제149조)으로 구성한다.

현재 안전기준 구성체계 및 조문 구성을 재분류한 방안은 Table 4와 같다.

3.2.3. 안전기준 시행세칙 구성의 단순화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본문 외에 7개의 별표, 7개의 별첨이 있으며, 유사한 항목의 통합 등을 통하여 그 구조를 단순화하여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서 “1. 충돌시 승객보호시험” 등 113

Table 4 Reclassification of composition system and article composition of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Current	Suggestion for Reconstruction
<b>Chapter 1 (General Rules):</b> Articles 1 to 3 - Purpose, definition	<b>Chapter 1 (General Rules):</b> Articles 1 to 3 - Purpose, definition
<b>Chapter 2 (Safety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and Two-wheeled Vehicles)</b> Section 1 Safety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 Structural standards: Articles 4 to 10 · Equipment standards: Articles 11 to 58	<b>Chapter 2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b> Section 1 Structure and Performance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 Specifications, fuel consumption rate, etc. : Articles 4 to 12
Section 2 (Safety Standards for Two-wheeled Vehicles) · Structure and device standards: Article 59 ~ Article 85	Section 2: Safety standards for automobile equipment - Equipment standards: Articles 13
<b>Chapter 3 (Safety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 etc.)</b>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85-2 Section 2 Safety standards for equipment, etc. · Articles 86 to 110-2 Section 3 Safety Standards for Autonomous Driving Systems · Articles 111 to 111-3 Section 4 Performance Test Criteria for Parts, etc. · Article 112	Section 3: Safety standards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 · Types of automated driving systems, etc. : Articles 94 to 96
<b>Chapter 3-2 (Safety standards for parts)</b> · Safety standards for each part: Article 112-2 to 112-13	<b>Chapter 3 (Safety Standards for Two-wheeled Vehicles)</b> · Structure and device standards: Articles 97 to 131
<b>Chapter 4 (Supplementary Rules)</b> · Passenger capacity, load capacity, standard exceptions, specifications, etc.: Articles 113 to 116	<b>Chapter 4 (Safety Standards for Parts)</b> · Safety standards for each part: Article 132 to 143
<b>Supplementary provision</b>	<b>Chapter 5 (Supplementary Rules)</b> - Passenger capacity, load capacity, standard exceptions, specifications, etc.: Articles 144 to 149
	<b>Supplementary provision</b>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별표 2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에 규정된 26개 항목과 별표 3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에 규정된 8개 항목은 별표 1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며, 각 항목의 내용도 해당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별표 1의 별첨 7개 항목 중에 별첨 1 ‘대체연료’와 같이 별표 1의 해당 항목인 ‘3.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로 이관하는 등 별첨을 최소화하여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다.

#### 4. 안전기준 체계 정비에 따른 개정안 도출

##### 4.1. 안전기준 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

상기 안전기준의 구성체계 재분류 및 조문 재구성 방안 등에 따른 안전기준 체계 정비는 조문 항목 및 조문 내용의 통합, 분리, 변경 등을 수반하고 있어 현행 안전기준의 조항번호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 1) 안전기준 조문의 통합과 순서 변경 등에 따라 본문 조항번호가 바뀌며, 이에 따라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의 별표, 별첨, 부칙 등에서 인용된 안전기준 조항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 2) 안전기준의 별표 번호는 안전기준의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바뀌게 되므로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 3) 안전기준과 관련된 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에 관한 규정”<sup>(10)</sup>의 별첨 2 자동차 안전검사 세부기준에 있는 안전기준 관련 조문 항목 및 별표 번호에 대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 4)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의 부칙에 명시된 안전기준의 조항번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 4.2. 안전기준의 내용구성에 대한 추가 정비 방안

안전기준 별표의 주요 내용은 성능 기준에 대한 것이며, 시행세칙의 별표는 시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준에서 시험법을 찾으려면 시행세칙을 확인하여야 하고, 시행세칙의 시험법에는 성능 기준의 내용은 없는 상황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기준과 시험법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성능 기준이 별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곳 또는 동일법령에서 성능 기준과 해당 기준에 대한 절차 및 시험법이 동시에 표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국내 법체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 같이 하나의 안전기준 항목에 성능 기준, 시험방법,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와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WP29 및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에 대응하여 보안기준에는 기준의 목적, 종류, 대상자동차의 종류 등만 기술하고 구체적인 기준, 절차, 시험법 등은 고시 등으로 위임하여 순발력 있게 안전기준 관련 국제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에 앞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의 내용구성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각 안전기준 조문에는 기준의 목적과 대상자동차의 종류, 또는 장치만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동차 및 장치를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의 내용이 시험방법과 관련이 없는 기준은 안전기준에 기술하고 그 외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이관한다.
- 2) 성능 기준과 시험방법 등이 기술된 안전기준의 별표는 시행세칙으로 이관한다.

#### 5. 결 론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동일한 장치에 대해 분리하여 규정한 항목은 통합한다.
- 2) 자율주행시스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향후 항목 확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절 또는 장으로 구성한다.
- 3) 구조 및 장치별 조항의 구성이나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장치 순서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세계자동차안전기준협의기구(WP29)의 분과별로 분류한다.
- 4)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별표 및 별첨은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그 구조를 단순화한다
- 5) 안전기준 내용구성에 대한 정비 추가 제시 방안으로 각 안전기준의 조문에는 대상자동차의 종류, 장치 등을 기술하고 성능 기준과 시험법은 시행세칙으로 이관한다.

후 기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규집, pp. 81~84, 2018.
- (2) 미국 교통법전, 49 U.S.C. Part 571, 2018.
- (3) UNCE WP.29, <https://www.unece.org/trans/main/welcwp29.html>
- (4) UNECE, REGULATION (EU) 2019/214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 (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0.
- (6)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0.
- (7)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2020.
- (8) 일본 교통성, 도로운송차량법, 2020.
- (9)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2020.
- (10)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2020.
-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2019년도 제네바 사무소 연차보고서, 2020.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Sc.do>
- (13)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